

대법원 2024. 7. 11 선고 2024다232332 판결 [대여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4. 7. 11 선고 2024다232332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3. 19 선고 2023나36260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5. 30 선고 2021가소138882 판결

전문

원고, 피상고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유

담당변호사 부지석, 송제경

피고, 상고인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트

담당변호사 신민호

판결 선고 2024. 7. 11.

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3. 19. 선고 2023나36260 판결

주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상고할 수 있는데, 상고이유 주장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신숙희, 대법관 이동원, 주 심 대법관 김상환, 대법관 권영준